사건명		**Butamax Advanced v. Gevo**		
소의 종류		특허침해금지명령 거절 항소	권리별	특허
원고		(반소항소인) Butamax Advanced Biofuels LLC (반소 피고) E.I. Dupont De Nemours and Co.		
피고		(반소피항소인) Gevo, Inc.		
권리사항		U.S.P. 7,851,188 (등록일 : 2010.12.14, 출원일 : 2006.10.25) "Fermentive production of four carbon alcohols"		
원심	법원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11-CV-0054
			소송일	2011.01.14.
	판결	특허침해금지 청구 기각		
	요지	지방법원은 특허청구항을 해석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거절하였다.		
항소심	법원	CAFC	판례분석	□ / □
	사건번호	No. 12-1490	판결일	2012.11.16.
	판결	원심 확정 및 특허청구항 해석 재심리 명령		
	요지	CAFC는 가처분 거절 결정에 대한 원심은 확정하면서, 원심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항 해석의 재심리를 명하였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특허권자인 Butamax 다양한 '이소부타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1년 1월 피고 Gevo를 특허침해로 제소하였고, 이어서 2011년 8월 이 사건 외 U.S.P. 7,993,889 특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Gevo는 '188특허 및 '889 특허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011년 9월 Gevo는 2건의 특허등록을 받자마자 Butamax를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2011년11월에는 다른 종류의 부타놀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자 다시 Butamax를 특허침해로 제소하는 등 2012년10월까지 상호 반소 및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10건의 소송을, 피고가 4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하게 특허 공방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evo는 소송특허가 상당한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Butamax는 2011년 9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12년 6월19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2년 4월 재심사에서 이 사건의 소송특허를 무효로 결정하였다.		

(C) Oneness Co. Ltd. 2012.11.15.